##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5

발의연월일: 2020. 07. 17.

발 의 자:임종성·송갑석·김진표

김정호 · 소병훈 · 이원욱

김종민 · 송옥주 · 김철민

김윤덕 · 김영호 · 홍성국

윤후덕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유내용

2017년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노후 화물자동차(2001년식) 추돌사고(사망 3명, 부상 7명) 이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화물자동차의 연식이 증가할수록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이 증가 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는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 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 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신설).

법률 제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4항을 제2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5항(종전의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에 도달한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에 도달한 화물자
	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
	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
	<u>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	<u>25</u>
터 <u>제23항</u> 까지의 준수사항 외	<u>제24항</u>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